

#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         |    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<br>번호 | 353 |
|----------|-----|

발의연월일 : 2024. 1. 18.

발의자 : 자치행정위원회

## 1. 제안 이유

장기기증 등록자 및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, 다자녀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며, 생활체육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 체육시설의 감면 지원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시민의 복지와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## 2. 주요 내용

- 가. 「남양주시 인체조직 및 장기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장기기증 등록자 및 장기기증자에 대한 감면 규정 신설(안 제11조제17호)
- 나. 「남양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」에 따라 다자녀가정의 지원범위를 확대(안 별표 3 제1호라목4))  
(현행)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또는 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 
(개정)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
- 다. 생활체육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체육시설 사용료의 경감 규정을 신설(안 별표 3 제1호라목6))
- 라. 「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2호의 주변지역 거주자에 대한 체육시설의 사용료 경감 규정을 신설(안 별표 3 제1호라목7))

3. 개정조례안 : 덧붙임

4. 신·구조문대비표 : 덧붙임

5. 예산수반사항 : 덧붙임

6. 관련법령 :

가. 「지방자치법」

나.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

다.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남양주시 조례 제 호

##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제18호 및 제19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7. 「남양주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에 따른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등록자와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자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< 별지 >

### [별표 3]

#### 사용료 징수기준(제9조제2항 관련)

##### 1. 일반적 기준

###### 가. 1회 사용시간

- 기본시간 : 2시간
- 사용료의 가산 또는 경감시의 기준 : 1시간(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봄)

###### 나. 사물함 사용료(월 사용료)

- 대형 사물함 : 5,000원
- 소형 사물함 : 3,000원
- 사물함 열쇠 분실료 : 15,000원

###### 다. 사용료 가산

###### 1) 초과 사용

- 주간 : 시간당 사용료의 100분의 10 가산
- 야간 : 시간당 사용료의 100분의 20 가산

###### 2) 토요일 및 공휴일

- 주간 : 평일 사용료의 100분의 30 가산
- 야간 : 해당주간 사용료의 100분의 30 가산

###### 3) 남양주시 시민 또는 남양주시 관내에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아니면 사용료에 100분의 200가산

###### 라. 사용료 경감

###### 1) 복합프로그램 이용시 : 개별 사용료 합계 금액의 100분의 10 경감

###### 2) 수영장·헬스장 및 인공암벽장 등을 이용하는 단체(1회 입장인원 30명 기준) : 사용료의 100분의 30 경감(다만, 빙상장의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10 경감)

###### 3) 가족회원(동일 주민등록에 등재된 가족 중 2명 이상이 동시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회원) : 총 이용료 합계의 100분의 10 경감

###### 4)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다자녀가정(「남양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) 중 체육·문화시설을 이용하는 회원 : 다자녀와 부·모에 한하여 이용료 합계의 100분의 50을 경감

###### 5) 시민체육 활성화를 위해 남양주시가 공공체육시설에서 추진하는 시

책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하는 해당 종목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추가 감면할 수 있다.(다만, 감면은 시책사업에 참여 중인 기간동안 가능하며, 6개월 이상 참여하는 경우 연간 감면할 수 있다.)

- 6) 시장은 생활체육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를 100분의 3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.
- 7) 「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 거주자가 별내면에 소재한 공공 체육시설 중 「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운영 조례」에 따른 에코랜드 체육시설 이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.
- 8) 중복감면사유 발생 시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한다. 다만, 5), 6) 및 7)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감면할 수 있으며, 이때 5), 6) 및 7)은 서로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.

마.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사용료 가산 또는 경감의 경우 : 100원 미만 절사  
바. 회원증 재발급 : 2,000원



## 비용추계서

### 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- 가. 「남양주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장기기증 등록자 및 장기기증자에 대한 감면 규정 신설(안 제11조제17호)
- 나. 「남양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」에 따라 다자녀가정의 지원범위를 확대(안 별표 3 제1호라목4)  
 (현행)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또는 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 
 (개정)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
- 다. 생활체육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체육시설 사용료의 경감 규정을 신설(안 별표 3 제1호라목6))
- 라. 「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2호의 주변지역 거주자에 대한 체육시설의 사용료 경감 규정을 신설(안 별표 3 제1호라목7))

### 2. 비용 추계결과

#### 가. 추계의 전제

- 2024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함
- 2023년도 남양주도시공사 및 행정복지센터 세외수입 금액을 반영하여 규모 설정(13,573,233천원)
  - 남양주도시공사 세외수입액: 12,707,402천원
  - 행정복지센터 세외수입액: 865,831천원
- 장기 기증 등록자 및 장기기증자(7,712명, '23.10월 기준)의 시설 이용으로 인한 비용산출과 기타 시설별 이용요금 및 부대시설 변경분은 경미하고 시설별 적용되고 있는 금액 기준이 다르므로 추계 미반영
- 다자녀가정 지원 조문 관련 2023년도 다자녀 감면금액 반영하여 규모 설정 (현행 대비 △1,585,000천원)
  - [현행 기준] 14,491세대 → 702백만원)
  - [개정 후] 47,217세대 → 2,287백만원)
  - 체육문화센터 2023년 세외수입 : 10,178백만원
- 생활체육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조문은 선언적 성격으로 비용 추계 미반영
-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 체육시설 감면 적용 시 수입 규모는 현행 대비 3,057천원/년 감소로 경미한 수준임
  - 2023년도 별내면 이용요금(10,523천원) \* 130% = 13,680천원

# 비용추계서

## 나. 추계결과

(단위: 백만원)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| 2024년    | 2025년 | 2026년 | 2027년 | 2028년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총 소요액                      | △1,323.5 | -     | -     | -     | -     |
| 다자녀가정 범위 확대                | △1,321   | -     | -     | -     | -     |
| 광역소각잔재 매립장<br>주변지역 감면조항 신설 | △2.5     | -     | -     | -     | -     |

### 3.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: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및 동법 별표 개정 관련

### 4. 작성자 : 문화교육국 체육과장 유형식

〈 연도별 비용 추계표 〉

(단위: 천원)

| 구분                 |       | 1차연도       | 2차연도 | 3차연도 | 4차연도 | 5차연도 | 계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---|
| 세입                 |       | △1,323,500 | -    | -    | -    | -    | △1,323,500 |
| 기타수익<br>(체육시설 사용료) |       | △1,323,500 | -    | -    | -    | -    | △1,323,500 |
| 세출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|      |      |      |      |            |
| 해당없음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|      |      |      |      |            |
| 재원 조달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|      |      |      |      |            |
| 의존<br>재원           | 소계    |            |      |      |      |      |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보조금   |            |      |      |      |      |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지방교부세 |            |      |      |      |      |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|      |      |      |      |            |
| 자체<br>수입           | 소계    | △1,323,500 | -    | -    | -    | -    | △1,323,500 |
|                    | 지방세   |            |      |      |      |      |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세외수입  | △1,323,500 | -    | -    | -    | -    | △1,323,500 |
|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|      |      |      |      |            |
| 지방채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|      |      |      |      |            |
| 기금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|      |      |      |      |            |
|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|      |      |      |      |            |
| 기타<br>(채무부담, 민자 등) |       |            |      |      |      |      |            |

☑ 「지방자치법」

제153조(사용료)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제156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 ①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,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.

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,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·징수,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른다.

제161조(공공시설)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.

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.

☑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절한 설치·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에 대한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상 방역 및 예방조치와 관련하여 체육시설의 종류, 이용자의 연령 등 체육시설의 특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원활하게 체육시설이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체육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·관리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·관리를 하여야 한다.

**제5조(전문체육시설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·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체육관은 체육, 문화 및 청소년 활동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,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.

**제6조(생활체육시설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,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.

## ☑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**제4조의2(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)**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 제3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1.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
2. 다음 각 목의 단체(해당 단체의 지역단체,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)가 주관하는 행사

가.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

나.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

다. 삭제 <2016. 8. 2.>

3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
4. 65세 이상의 사람, 장애인 및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
5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
6.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
7. 그 밖에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사 또는 활동